

## 상주시 공고 제2023-1344호

「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26일

상 주 시



### 「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을 반영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책무 추가(안 제4조)

- 1) 설치·관리자의 책무 확대(안 제4조)
- 2) 공중화장실등에 불법 카메라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(안 제4조의3)
- 3) 공중화장실 점검장비 대여 기준 마련(안 제4조의4)

나.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례 위임(안 제4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)

- 1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제4항 신설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
- 2) 안전관리 시설 지정 여부, 설치대수 등 관리항목 별지1 반영

다. 개방화장실의 지정 규정 수정(안 제12조)

- 1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

라.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(안 제18조 및 별표)

- 1) 미신고 유료화장실 설치·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

마. 기타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조례 용어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간: 2023. 9. 26. ~ 10. 16. (20일간)

나. 제출방법: 우편, 이메일, 팩스

다. 기재내용: 성명, 주소, 연락처, 의견 등

라. 제출처: 상주시장(환경관리과)

- 1) 주 소: (우 37211)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, 상주시청(환경관리과)
- 2) 이메일: blueyium21@korea.kr
- 3) 팩 스: 054-537-6189(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)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환경관리과(☎ 054-537-737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 홈페이지

([www.sangju.go.kr](http://www.sangju.go.kr) → 행정정보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 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: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일괄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